

학 칙

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대학은 지역공동체 내지 지역협력을 기반으로한 아시아 지역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국제교류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법 및 외국법 관련 전문 지식 연구와 아시아 지역지도자 양성,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과정)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대학에 법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 석사과정이라 함)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 박사과정이라 함)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석·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.

제 3 조 (학과와 정원) 본 대학의 석사과정은 국제법률학과와 국제기구학과를 두며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하며, 박사과정은 국제법률학과의 세부전공으로 국제법일반과 국제경제법을 두며, 국제기구학과의 세부전공으로 국제기구일반과 유럽연합및지역공동체법의 총 4개 분야를 두며 입학정원은 6명으로 한다.

제 3 조의 2(부속교육기관) 본 대학에는 국제평생교육원을 둔다. 국제평생교육원의 세부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

제3조의 3(부속기관) 본 대학에는 출판부를 둔다. 출판부의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2 장 입 학

제 4 조 (입학통지) 원칙적으로 입학허가 통지는 매학기 시작 1개월 이상 이전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
제 5 조 (입학자격) 본 대학의 학위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
1. 석사과정

가.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내국인 및 외국인

나.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

다.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대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

2. 박사과정

가.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내국인 및 외국인

나. 석사학위 논문 2부

다. 연구경력 및 계획서

라.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

제 6 조 (입학지원 서류)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소정 신청서
2. 졸업(수료)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3. 출신학교장의 추천서
4.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소정의 수수료

제 7 조 (입학시험 및 사정)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시험을 행할 수 있다.

제 8 조 (입학허가)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.

제 9 조 (입학절차)

-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내에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10 조 (편입학)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재입학)

- ① 퇴학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조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학기초 등록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재입학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수업연한 · 재학연한 · 학년도 · 학기 · 수업 및 휴업일

제 12 조 (수업연한 · 재학연한)

- ①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이상 으로 한다.
- ②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기는 수업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3 조 (학년도 및 학기)

- ① 학년도는 9월부터 익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둔다.

제 봄 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까지

제 가을 학기 :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

제 14 조 (수업일수 및 방법)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2주 이상(매학기 16주 이상)으로 한다.

제 15 조 (휴업일)

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1. 동기방학

2. 하기방학

3. 개교기념일

4. 일요일과 기타 국정 공휴일

② 임시휴업 및 방학 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4 장 등록 · 휴학 · 퇴학 · 제적

제 16 조 (등록 및 수강신청)

①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수강신청 등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.

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 납부로써 완료된다.

② 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7 조 (수강과목 변경)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총장의 허가 없이 변경하지 못한다.

제 18 조 (휴학) 질병,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다만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종합병원 원장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휴학기간)

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.

②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,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통산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20 조 (복학)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복학할 수 있다.

제 21 조 (퇴학)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구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 22 조 (제적)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한다.

1.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2.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3. 학칙상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퇴학 및 출교 처분된 자
4. 학칙상의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

제 5 장 교과 · 수업 · 학점 · 졸업

제 23 조 (교과목 구분)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,

박사과정은 직접 전공 과목, 관련 전공 과목(선택), 그리고 해외 현장 연수로 구분한다.

제 24 조 (교과과정) 교과과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5 조 (교과목 개설)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제 26 조 (개강시간수) 매학기의 실제 개강시간수는 개강 예정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. 이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그 학기에 보장하거나 또는 다음 학기에 개강하여 학점제한외로 취득하게 한다.

제 27 조 (이수학점)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1주 1시간씩 한 학기간 16주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.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 50학점, 박사 35학점이상으로 한다.

제 28 조 (학기당 이수학점) 학점은 매학기 교수들의 건의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29 조 (수료평균평점) 각 과정의 수료를 위한 총 이수 학점의 평균 평점은 2.5이상이어야 한다.

제 30 조 (학위의 종류) 본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: 2018.03.22.)

1. 석사학위
2. 박사학위
3. 명예박사학위

제 31 조 (학위수여 및 졸업) ①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, 박사학위를 수여한다.

② 국제법률 기타 본 대학교의 전공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또는 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, 또한 본 대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총장은 총장자신의 추천 또는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위원회 (총장, 각 처장,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들로 구성됨)의 심의를 거쳐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다. (개정 : 2018.03.22)

제 6 장 학생 개인별 지도위원회 및 학위논문 제출 절차

제 32 조 (박사과정 지도위원회 구성) 총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때에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33 조 (연구계획서) ① 박사과정의 학생은 과정이수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,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회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수정원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4 조 (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) ① 석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대학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회 및 대학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과한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 35 조 (학위청구 논문제출 연한) 학위청구 논문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6년, 박사학위과정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.

제 36 조 (수료시기)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별로 한다.

제 7 장 시험 · 성적

제 37 조 (성적평가)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등급으로 표시하고 출석 · 연습 · 복습 ·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

제 38 조 (시험) 시험은 그 학기의 개강예정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한 각 교과에 대하여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이를 행한다. 그러나 필요에 의하여 임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.

제 39 조 (응시자격)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 40 조 (성적분류)

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.

합 격 P 불계(합격)

등급	평점	100점기준
A+	4.5	96점이상
A	4.0	90점이상
B+	3.5	86점이상

B	3.0	80점이상
C+	2.5	76점이상
C	2.0	70점이상
D+	1.5	66점이상
D	1.0	60점이상
F	0.0	60점미만

미완성 I 불계(미완성)

② 졸업 · 진급 · 성적경고 및 유급에 관한 사정기준은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 41 조 (불응시 인정점수)

- ① 병역 ·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.
- ③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.

제 42 조 (학점취소)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.

제 43 조 (학위취소) 졸업생으로서 진조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석사 · 박사학위를 박탈한다.

제 8 장 포상과 장학금 및 징계

제 44 조 (성적경고)

- ① 매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1.7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과한다.
- ② 재학기간 중 성적경고를 연속하여 2회 받은 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 한다.
- ③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 ②항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재입학 할 수 있다.

제 45 조 (학기 우등생) 각 학기에 있어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는 이를 표창할 수 있다.

제 46 조 (졸업 우등생) 재학기간을 통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졸업시에 이를 표창할 수 있다.

제 47 조 (장학금)

- ① 각 과정의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와 재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가사가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장학금의 지급결정은 총장이 행한다.

제 48 조 (징계)

-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정상에 의하여 견책·정학·퇴학 및 출교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 - 1.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 - 2.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는 자
 - 3. 고의적인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
 - 4. 기타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
- ② 견책과 정학, 퇴학 및 출교처분은 대학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이를 행한다. 다만, 필요시 해당 학생의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③ 출교처분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.

제 9 장 등 록 금

제 49 조 (등록금 납부의무) 학생은 등록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50 조 (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)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동시에 징수한다.

제 51 조 (등록금 공시)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전에 이를 공시 한다.

제 52 조 (등록금의 반환)

- ① 일단 납부한 금액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는 예외로 한다.
- ②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 10 장 공 개 강 좌

제 53 조 (공개강좌)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11 장 직 제

제 54 조 (직제) 본 대학의 직제는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 12 장 대학원위원회

제 55 조 (대학원위원회) 본 대학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

제 56 조 (구성)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세칙으로 정한다.

제 57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58 조 (소집 및 심의)

①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③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한다.

제 59 조 (기능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,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,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13 장 학생활동

제 60 조 (학생회) 학생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,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 14 장 학칙의 개정

제 61 조 (학칙의 제정 및 개정) 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공고 및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 (개정 : 2019.06.24)

1. 관련 법령, 정관 등 상위 규범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
2. 위원회의 심의를 마치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 개정
3. 단순한 자구 수정,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

제 15 장 준용규정

제 62 조 (학위수여규정)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

제 62조의 2 (학위검증규정) 학위 검증에 관한 규정 및 학위검증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 62조의 3 (장애학생의 지원) 장애학생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 63 조 (세칙) 이 대학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.

제 16장 자체평가

제64조 (자체평가 규정)

-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, 연구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- ② 자체평가 기준 및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65조 (시행세칙) 이 대학 자체평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로써 따로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개정학칙은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8.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9.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